

「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」 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」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시 승인된 자료 목록에 미국 연방항공청 (FAA) 승인자료 이외에 유럽항공안전청(EASA) 승인자료도 포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시 승인된 기술자료 목록에 미국 연방항공청(FAA) 승인자료 외에 유럽항공안전청(EASA)으로부터 인증받은 설계조직(DOA)이 승인한 자료도 포함하고자 함(안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「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」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항공기술과)로 2023년 7월 7일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보내실 곳 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
(☎ 044-201-4292, 팩스 044-201-5630)

※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(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